

승무자격(제18조제9항 관련)

1.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시운전 운항관리자

시운전 선박	승 무 자 격
가. 총톤수 3만톤 이상 선박	1) 7년 이상 경력자로서 3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2) 5년 이상 7년 미만 경력자로서 2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3) 5년 미만 경력자로서 1급 항해사 자격 소지자
나. 총톤수 6천톤 이상 3만톤 미만 선박	1) 7년 이상 경력자 2) 5년 이상 7년 미만 경력자로서 3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3) 5년 미만 경력자로서 2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다. 총톤수 5백톤 이상 6천톤 미만 선박	1) 5년 이상 경력자 2) 5년 미만 경력자로서 3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2. 조선소와 일시 계약의 방법으로 선박을 시운전하는 시운전 운항관리자

시운전 선박	승 무 자 격
가. 총톤수 6천톤 이상 선박	1급 항해사
나. 총톤수 3천톤 이상 6천톤 미만 선박	2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다. 총톤수 1천6백톤 이상 3천톤 미만 선박	3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